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장애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 최보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066호)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2
IV . 검토의견	3
1. 장애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안 제15조의2)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보윤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4. 10. 30.

다. 회 부 일 : 2024. 10.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1년부터 「국가재정법」에서 예산 및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성인지 예·결산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이에 맞춰 성인지 결산제도를 도입하였음.

한편, 그동안의 장애 관련 예산과 정책은 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었으며, 우리 사회에 장애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지 못했고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장벽을 제거하는데 한계가 있는 등 주류 사회 내에 장애인을 포용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은 미흡한 실정임.

또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등이 10년 넘게 제도화되면서 성주류화가 우리 사회에 안착된 반면, 장애주류화는 장애인단체 등에서 오랫동안 이러한 부분을 논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법 개정으로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장애인지 예산에 반영하도록 장애인지 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보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평등정책법안」(의안번호 제2200657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0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장애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안 제15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장애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 장애인지 결산서 제출(예산서 작성·제출 및 결산서 작성은 「국가재정법」에 신설) - 장애인지 기금결산서 제출(기금운용계획서 작성·제출 및 기금결산서 작성은 「국가재정법」에 신설)

개정안은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5066호)¹⁾의 의결을 전제로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장애인지 결산서 및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산의 원칙에 장애 관련 사항을 명시하고, 예산 및 기금이 출생 등 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형평성 있는 예산의 재분배를 위한 국가의 책임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066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장애인지 예·결산제도 도입 - 예산의 원칙에 장애평등 관련 사항 규정 - 장애인지 예산서 작성·제출 -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제출 - 장애인지 결산서 작성(제출은 「국가회계법」에 신설) - 장애인지 기금결산서 작성(제출은 「국가회계법」에 신설)

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예산분야별로 장애의 특성에 적합한 정책지원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 보이나,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예산 및 기금이 장애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주요 선진국에서도 장애인지 예·결산의 도입 사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 결과에 따라 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

한편, 본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인 「장애평등정책법안」(의안번호 제22006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 위원회의 심사과정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한다) 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야 한다. 1. ~ 7의2. (생략) <u><신설></u> 8. ~ 12. (생략) ②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1. ~ 2의2. (생략) <u><신설></u> 3. (생략) ③·④ (생략) ⑤ 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 결산 서,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온실 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 및 같은 항 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① ----- ----- ----- ----. 1. ~ 7의2. (현행과 같음) <u>7의3. 장애인지 결산서</u> 8. ~ 12. (현행과 같음) ② ----- -----. 1. ~ 2의2. (현행과 같음) <u>2의3. 장애인지 기금결산서</u>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 <u>같은 항 제7호의</u> <u>3에 따른 장애인지 결산서, 제2항제2</u> <u>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 같은</u> <u>항 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u> <u>지 기금결산서 및 같은 항 제2호의3</u> <u>에 따른 장애인지</u> ----- ----- -----.

문의처

02)6788-5153

